

제1차(2007~2016)

항만재개발 기본계획(변경)

-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추가)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62호)



2009. 4.

국 토 해 양 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62호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2007~2016)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중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반영·고시합니다.

2009. 4. 10

국토해양부장관

제1차(2007~2016) 항만재개발 기본계획(변경)

-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추가) -

1. 대상항만(1개 항만)

- 무역항 : 고현항

2. 고현항 재개발 기본방향

- 항만기본계획('06.12)상 2011년까지 물동량 수요에 부합되도록 일반 및 여객부두, 물양장 등 시설확충으로 항만기능 제고
- 거제시의 조선산업 발전에 따른 상주인구 및 방문 관광객 수용을 위한 주변 도심내 인프라 시설확충으로 도시서비스 부족난 해소
- 고현만 해안권 개발을 통해 조선 산업의 메카로서의 위상정립 및 거제시의 도시성장기반 구축

3. 대상항만 선정기준

- 대상항만은 항만시설의 기능·구조적 노후정도, 개발 잠재력(사업성) 및 대체시설 확보여부 등을 종합적인 검토·분석을 통하여 결정
- 고현항은 배후부지 협소·시설노후화 등으로 항만기능이 저하되고 주변도심 환경 및 발전을 저해

선정지표	선 정 기 준
노후화 / 유휴화	○ 항만시설 대비 하역능력 평가 등 항만시설의 노후화 정도를 분석하고, 항만시설이 없는 준설토 매립지의 경우에는 항만 시설 이용여부 등 유휴화 정도를 검토
대체 항만	○ 항만재개발 예정구역의 항만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부지 확보 가능여부를 검토
개발 시기	○ 항만재개발의 시행시기를 단계별로 설정하여 언제 시행할 수 있는지에 따라 선정 여부를 검토
도시계획적 잠재력	○ 자연환경, 토지이용, 접근성, 경관 등의 입지여건을 분석하여,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등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개발 필요성 검토
정책과의 연관성	○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의지도 고려하여 선정기준에 반영
파급 효과	○ 항만재개발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4. 예정구역 현황 및 선정사유

-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추가)” 별책 참조

5. 토지이용계획 기본구상

- 주변도심의 인프라 시설 부족난 해소를 위해 기능·용도별 집중화된 공간배치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시설별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도입가능시설	면적(㎡)	구성비(%)
계	-	919,064	100.0
항 만 시 설	여객터미널, 부두, 마리나	65,823	7.2
유 치 시 설	-	241,754	26.3
주거시설	공동주택, 주상복합	53,536	5.8
상업시설	전용상가, 컨벤션 센터	30,362	3.3
업무시설	오피스텔, 비즈니스센터	49,856	5.4
관광시설	놀이시설, 워터파크, 관광식당	63,318	6.9
문화시설	영화관, 전시장, 박물관	2,964	0.3
체육시설	스포츠센터, 운동장, 체육관 등	17,997	2.0
교육시설	특수고, 학원, 영어마을	16,008	1.7
의료시설	종합병원, 특수병원, 전문병원 등	7,713	0.9
공 공 시 설	-	310,859	33.8
광 장	일반광장	28,689	3.1
공 원	근린공원, 생태공원	95,018	10.3
녹 지	완충녹지	34,469	3.7
수 로	수로	49,595	5.4
도 로	주간선, 보조간선	100,309	11.0
주차장	노외주차장	2,779	0.3
공 유 수 면	-	300,628	32.7

6. 관련도서 및 도면 : 별책 게재 생략

7. 관련자료 열람방법

-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추가)의 별책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란에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추가) 고시’ 참조)에 게재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과(전화 02-2110-6406, 팩스 02-504-682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추가)

목 차

I. 항만재개발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1
II. 항만재개발 기본방향	2
III. 항만재개발 예정구역의 현황 및 선정사유	5
1. 예정구역 현황	5
2. 예정구역 선정사유	15
IV. 항만재개발에 따른 항만기능의 재편 및 정비방향	16
1. 항만기능재편 필요성 및 여건분석	16
2. 대체항만시설 개발방향 및 규모	17
V. 토지이용 · 교통계획 및 공원광장계획 등의 기본구상	19
1. 토지이용계획	19
2. 교통계획	22
3. 공원 · 광장계획	24
VI. 추정사업비 및 단계별 투자계획	26
VII. 관계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	28

I. 항만재개발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

2. 위 치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일원 전면해상



3. 면 적

□ 총 면 적 : 919,064 m²

○ 항만구역 면적 : 919,064 m²

○ 주변지역 면적 : - m²

II. 항만재개발 기본방향

가. 항만기능의 노후화로 재개발 필요

- 고현항의 항만시설로는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운영 중인 철재부두로서 취급화물은 조선소에서 사용되는 기자재가 대부분을 차지
 - 철재와 모래 화물을 제외하면 항만물동량 발생은 미약한 실정
- 항만기본계획('06.12)에 의거 '11년까지 일반, 모래 및 여객부두 확충 등 재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최근 준공·운영 중인 모래(오비)부두 이외의 개발실적 전무
 - 장평물양장 및 여객부두는 배후부지 협소 및 이용편의시설 부족
- 항만부지 협소·시설 노후화에 따른 항만기능재편과 더불어 주변 도시기능 향상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개발계획 필요

나. 도시기능 부족현상 해소

- 거제시는 조선산업의 발전에 따른 인구 집중현상으로 도시기반 시설 등이 부족한 실정이나, 상주인구(내국인 3만명, 외국인 1.5천명)와 방문 관광객 수용을 위한 도시용지 확보 절실
- 199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개발가능지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가지로 조성되었으며, 주변 산악지형(거제시의 75%차지)으로 인해 내륙 측 토지수용에는 한계성 내재
- 연륙교량(거가, 거마대교) 건설 및 국도 14호선 확장으로 인해 인적·물적 교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와 도시내 문제점 극복을 위한 관광·업무·주거·문화 등의 거제시의 미래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도시서비스 기능 확충 필요

다. 친수항만의 개발

- 고현항은 2011년까지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개발계획 차질 예상
- 기존의 노후 및 유흡화된 항만공간에 대한 재개발 수요의 증가 추세를 감안, 해양산업과 시민생활이 병존하는 복합공간 확보 필요
- 해안가 및 구도심지역과 연계하여 친환경 Waterfront 개발로 신개념의 친수항만 개발을 통한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라. 거제시 위상정립

- 거제시는 조선산업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도시기반시설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정주체계 구축 미비
- 명실상부한 세계 조선산업의 메카로서의 위상 재정립하고 해양 관광도시의 면모에 걸맞은 지역의 상징적인 Land Mark 필요
- 도시의 특성 및 이미지 재창출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조선 산업 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국제적 인지도 제고

마. 거제시의 성장잠재력

- 부산광역시, 김해시, 마산시,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등 인구 1,000만명의 강력한 배후세력권 형성

- 국가 주력 기간산업인 조선 산업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경제활동 요소로 작용하여 경제권 형성 용이
- 각종 산업의 고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다양한 문화자원 및 관광자원을 보유한 거제시의 성장잠재력 교두보 역할 정립
- 조선 산업 불황 시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되므로 지역여건에 적합하고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산업육성에 부응

Ⅲ. 항만재개발 예정구역의 현황 및 선정사유

1. 예정구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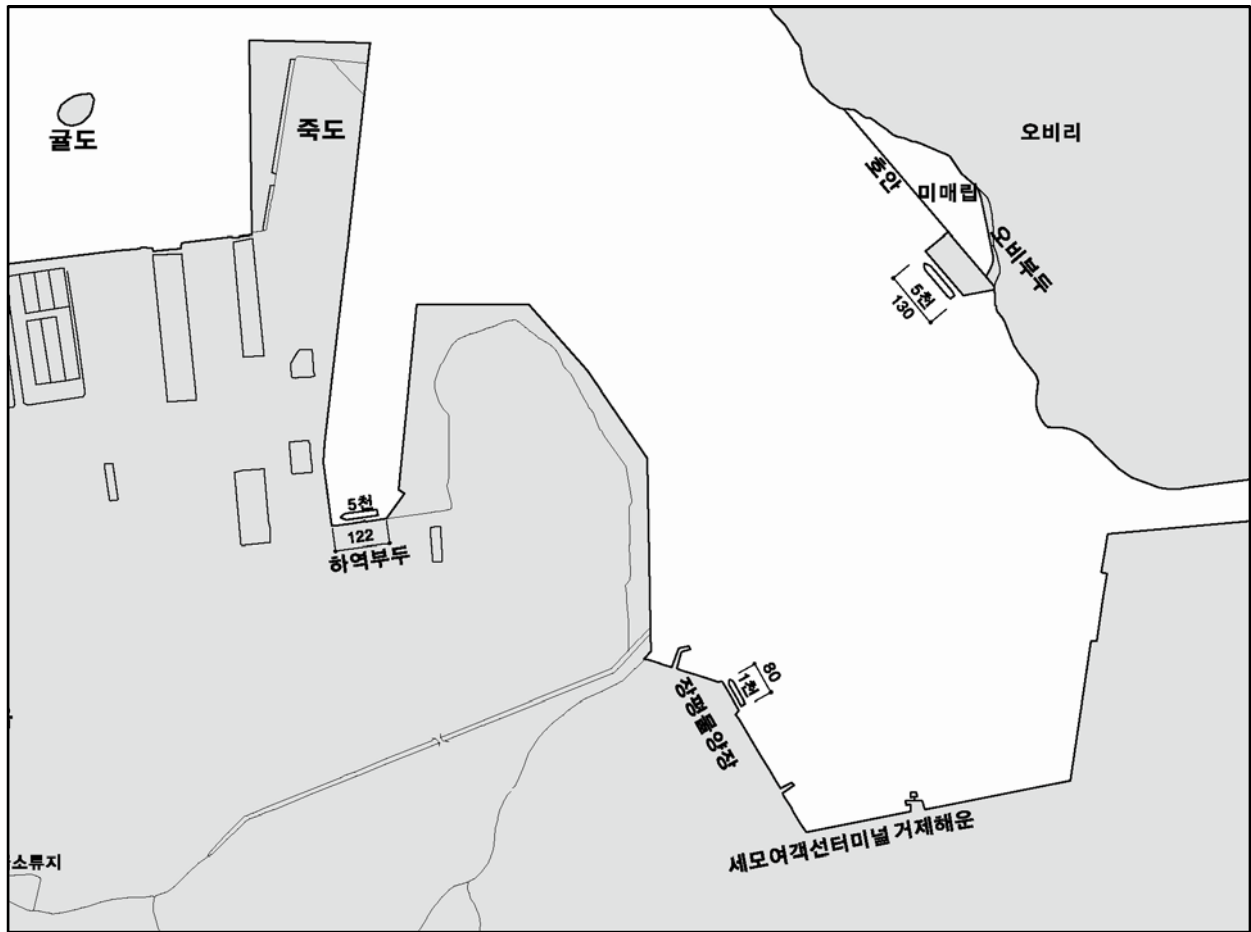
가. 항만시설 현황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에 위치한 고현항은 거제도 및 육지에 의해 동측, 남측, 서측 등 3면이 차폐되어 외해로부터 유입되는 파랑의 영향이 미약한 천혜의 항만으로서 1983년 8월 30일 1종 지정항(무역항)으로 지정됨
- 고현항 접안시설은 2008년 현재 안벽 252m, 물양장 80m에 이르며, 이외에 여객선 터미널, 소형선 선착장 등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 고현항을 이용하는 입·출항 선박은 2001년 3,168척에서 2005년 7,041척으로 연평균 22.1%의 증가율을 나타냄
- 고현항의 화물처리실적은 2001년 1,587천R/T에서 2005년 1,928천R/T로 연평균 5.0%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요 취급화물은 철재로서 항만물동량의 68.1%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기타광석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접안시설 현황 >

구 분	연 장 (m)	전면수심 DL. (m)	구조 형식	접안능력 (DWT)	하역기계	취급화물	비 고
하역부두	122	(-)11.0	잔교식	5,000×1	크레인(15톤) 2기	철재	민자시설 (삼성중공업)
오비부두	130	(-) 7.5	중력식	5,000×1		모래	2008. 4 운영시작
장평물양장	80	(-) 4.0	중력식	1,000×1		일반화물	

○ 항만시설 현황도



나. 인구 및 가구현황

- 대상지는 거제시 고현동 및 장평동에 포함됨
- 2020 거제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별 분류상 중앙생활권에 포함됨
- 2008년 거제시 현재인구는 217,211명이며, 대상지가 속한 고현동 및 장평동은 23,895가구에 67,299명으로 거제시 전체인구의 약 31%에 달하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거제도시기본계획상 2020년 거제시 계획인구는 300,000명으로 설정

구분	세대	인구(명)	구성비(%)	면적(km ²)	인구밀도(명/km ²)
계	79,463	217,211	100.000	401.59	541
고현동	13,876	40,489	18.640	5.86	6,909
장평동	10,019	26,810	12.343	6.97	3,846
상문동	6,596	21,000	9.668	22.00	955
수양동	2,763	8,467	3.898	9.41	900
일운면	2,467	6,239	2.872	30.51	204
동부면	1,558	3,661	1.685	52.50	70
남부면	846	1,870	0.861	31.87	59
거제면	2,777	7,070	3.255	37.29	190
둔덕면	1,544	3,658	1.684	33.78	108
사등면	3,531	8,415	3.874	34.69	243
연초면	3,897	8,912	4.103	40.12	222
하청면	2,089	4,894	2.253	29.10	168
장목면	2,309	5,436	2.503	36.89	147
장승포동	1,511	3,713	1.709	2.15	1,727
마전동	2,345	5,728	2.637	1.92	2,983
능포동	4,612	12,936	5.955	3.21	4,030
아주동	3,180	8,725	4.017	12.45	701
옥포1동	3,581	9,152	4.213	2.26	4,050
옥포2동	9,962	30,036	13.828	8.61	3,489

다.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 대상지에는 5개의 토지가 존재하며, 전체면적 중 잡종지(2필지)가 857m²로 0.10%를 차지, 제방이 1,682m²로 0.18% 차지하며, 미지정지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공유수면적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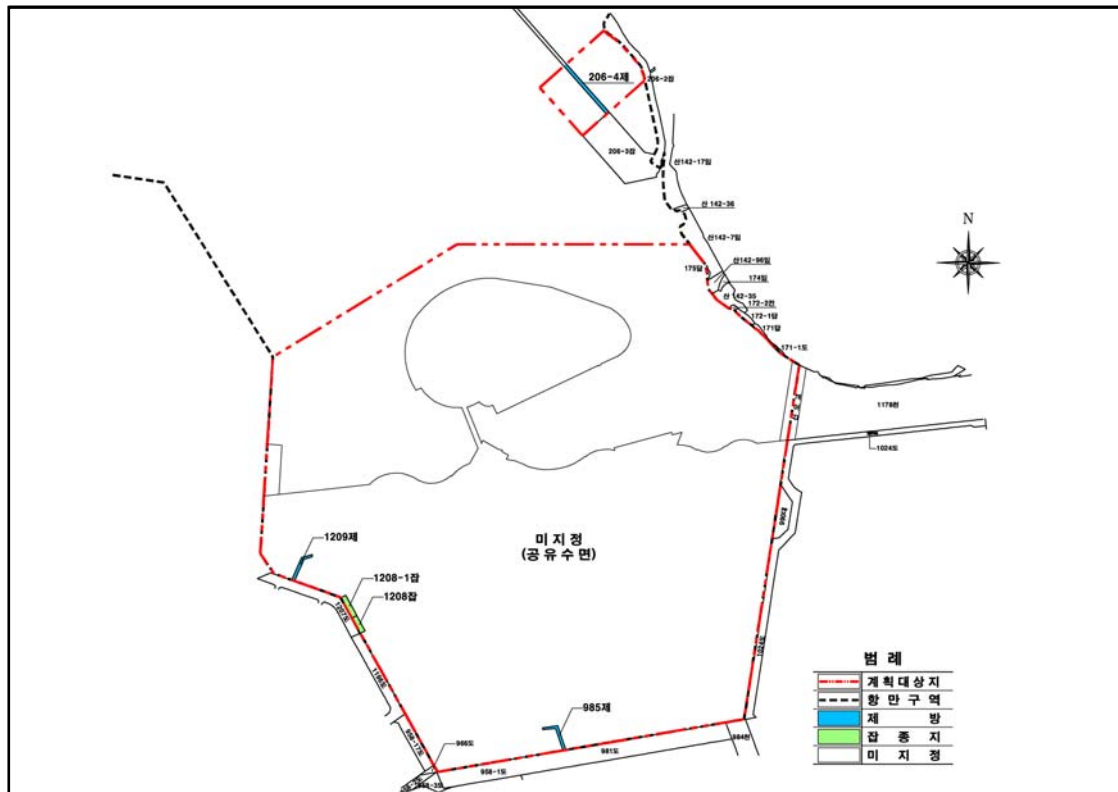
구분	계	잡종지	제방	미지정
면적(m ²)	919,064	857	1,682	916,525
구성비(%)	100.00	0.10	0.18	99.72

○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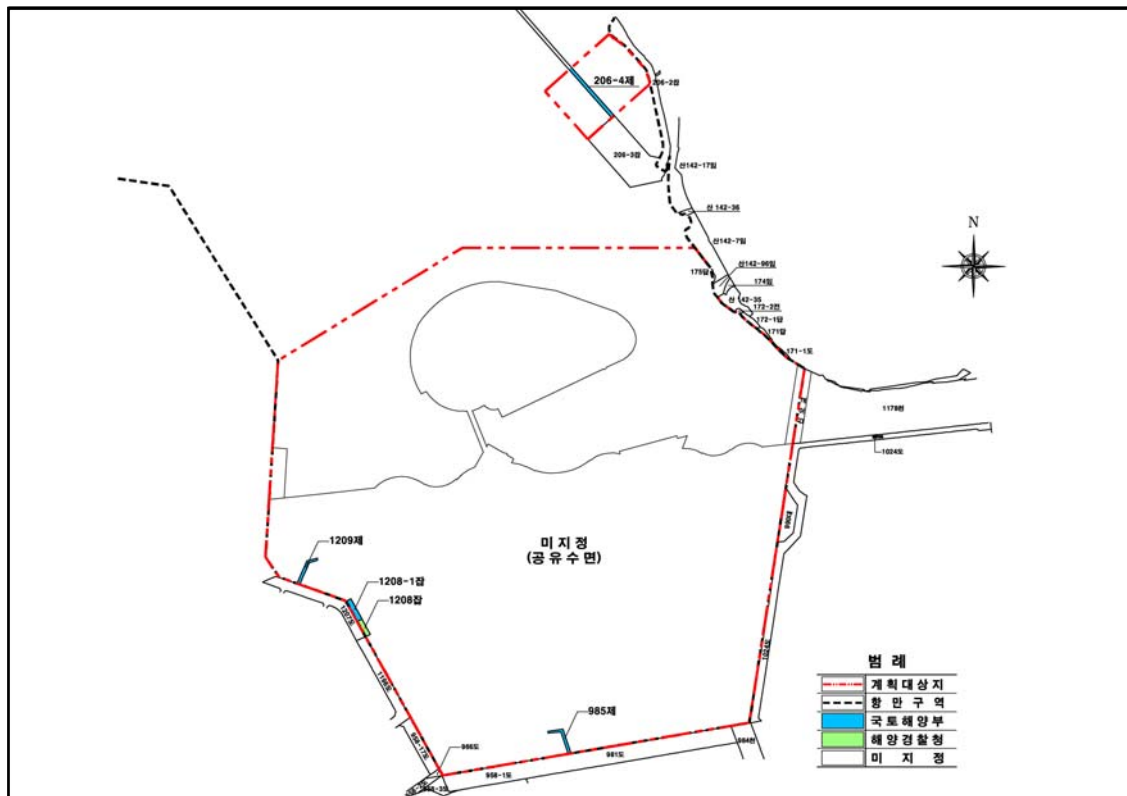
- 대상지내 토지는 국가소유가 4개 필지(2,182m²)이며, 1개 필지(357m²)는 해양경찰청이 소유하고 있음

구분	계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미지정
면적(m ²)	919,064	2,182	357	916,525
구성비(%)	100.00	0.24	0.04	99.72

< 지목별 토지이용현황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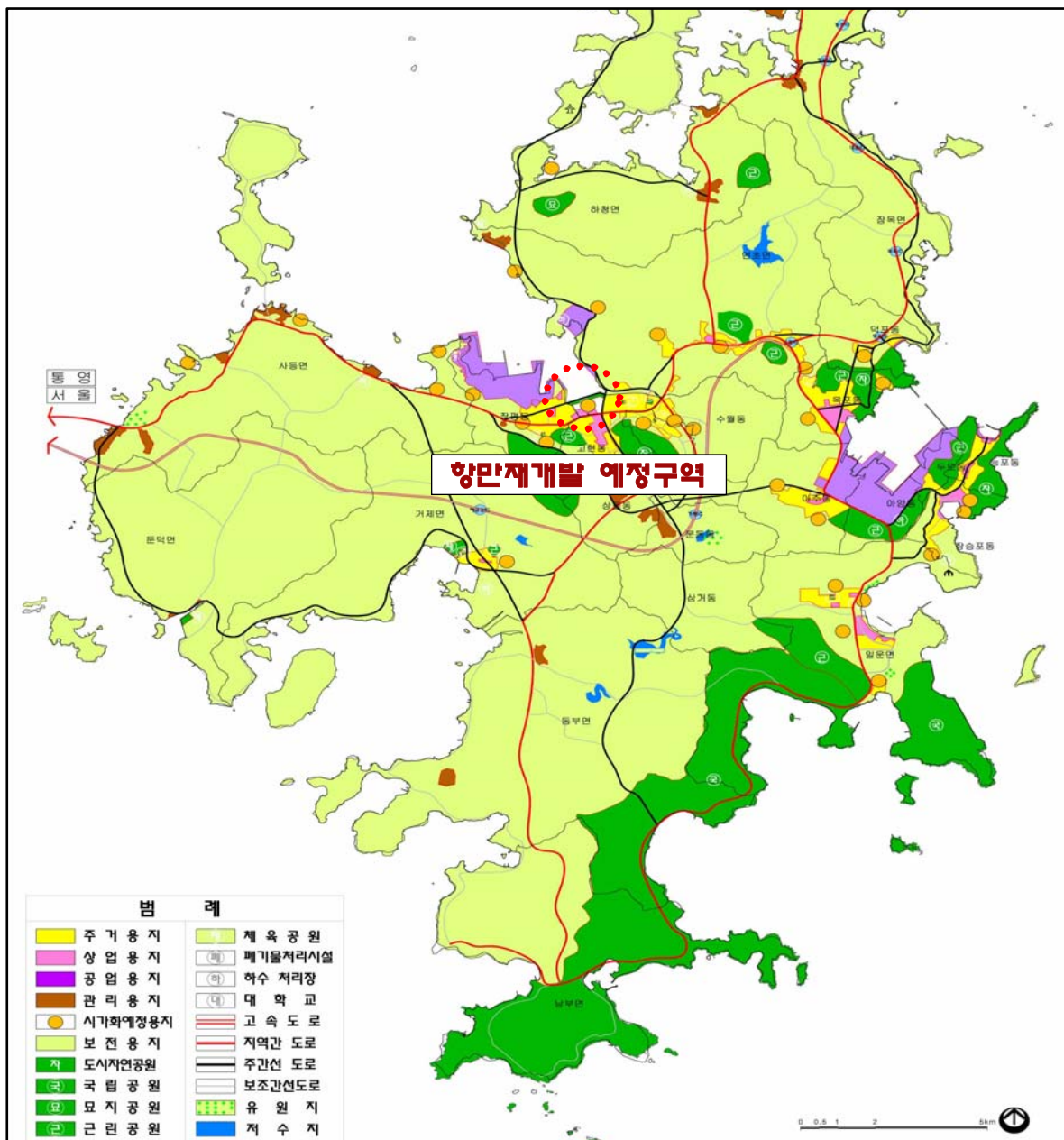
<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도 >



라. 도시계획현황

-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349,000㎡)로서 상업지역(216,000㎡) 및 공원(133,000㎡)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본 사업 예정면적(919,064㎡)과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수행할 예정임
- 대상지와 인접한 주변지역은 상업용지 및 주거용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도시기본구상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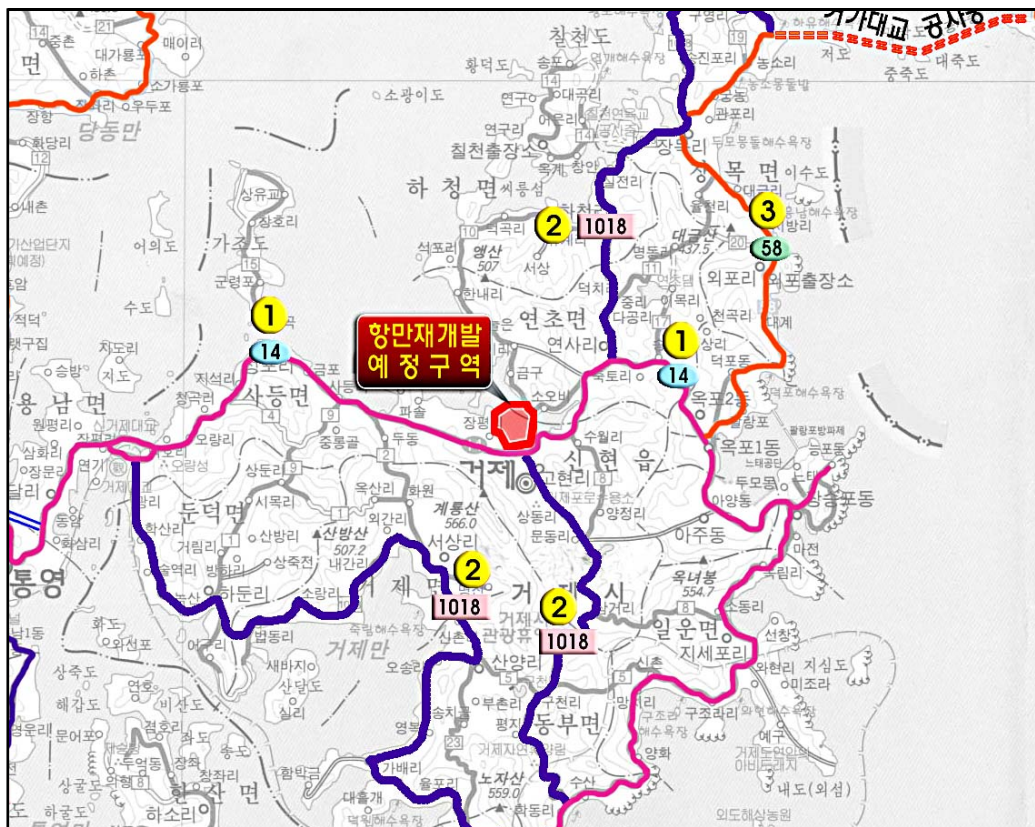


마. 교통현황

- 거제시는 섬지역이라는 지역특성상 주변 광역교통망으로는 국도14호선이 동서축을 형성하여 통영시와 연결
- 주간선도로는 국도14호선으로 교통량이 가장 집중되고 있는 외부로 연결되는 도로이며, 지방도 1018호선과 국지도 58호선이 기타 남북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기능을 담당

구 분		노선명	구 간	연장(km)	차로수 (양방향)	비 고
①	일반국도	14호선	통영시 - 남부면	70.8	2~4	
②	지방도	1018호선	사두면 - 유흥리	95.6	2	
③	국지도	58호선	옥포면 - 장목면	10.0	2	

< 교통 현 황 도 >



바. 환경현황

- 본 사업지구가 위치한 거제시에는 자연환경보호지역 중 습지보호지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자연환경보호지역으로 소병대도 등 3개소의 도서가 특정도서(환경부고시 제 2007-171호) 및 거제시 고란초 서식지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본 사업지구로부터 약 7.0km 이상 이격되어 있음

< 특정도서 지정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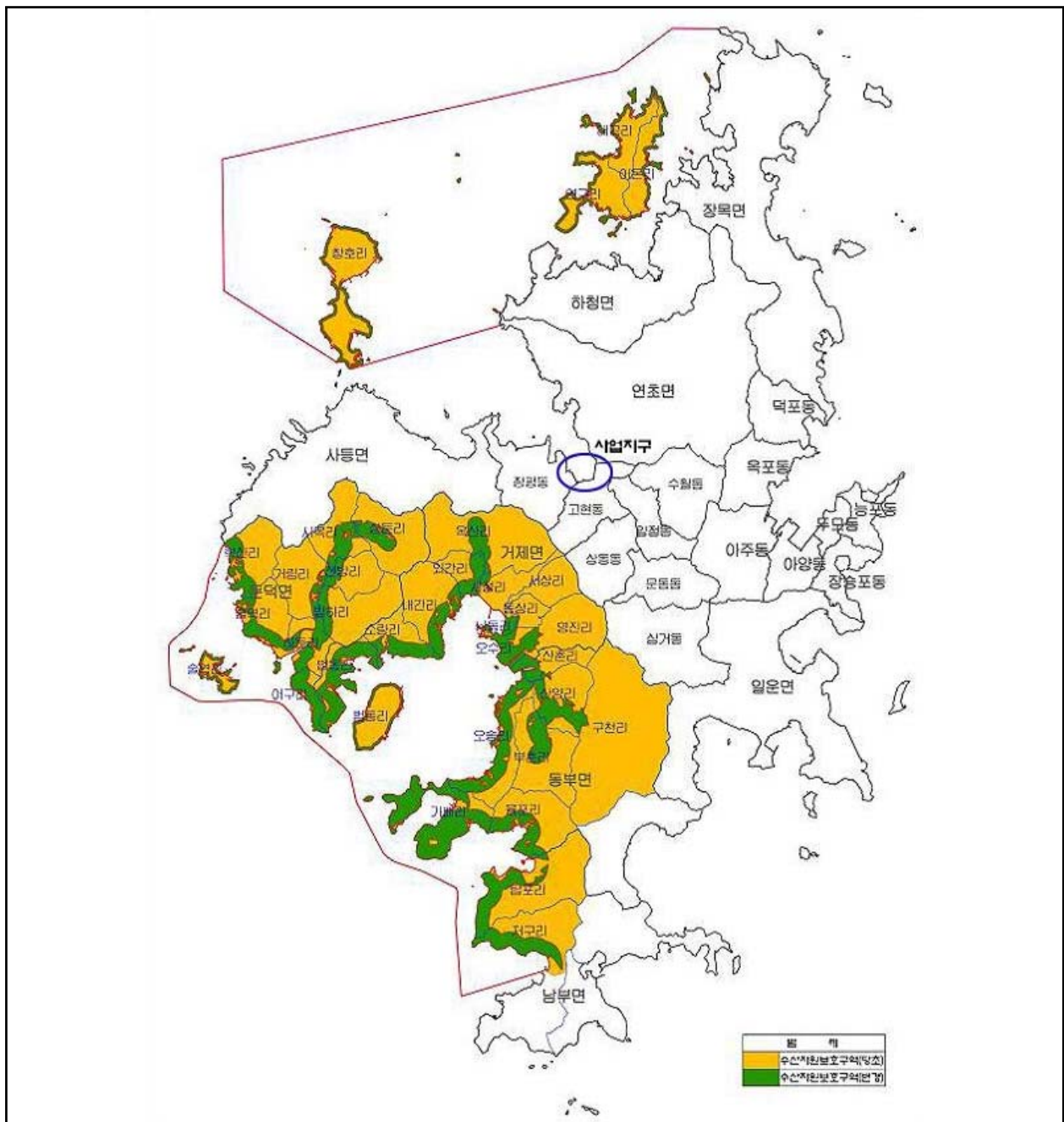
지정 번호	도서명	지정사유	면적 (㎡)	지번
113	소병대도	•해식애, 타포니, 시스택, 해식동 발달 •원추형의 수려한 갯바위섬으로서 자연경관 우수 •후박나무, 동백나무 군락 우수	12,397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산46
114	대병대도	•원추형의 수려한 자연경관 •후박나무, 동백나무군락 식생 우수 •해양무척추동물 다양성 풍부 •시스택 발달	6,331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산49
115	소다대도	•원추형의 갯바위섬으로 자연경관 수려 •후박나무, 동백나무군락 색생 우수 •해양무척추동물 다양성 풍부 •시스택 발달	8,430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산22

< 생태·경관보전지역 현황 >

지역명	위 치	면적(k㎡)	특 징	지정일자
거제시 고란초 서식지	거제시 하청면 산 144-3	0.002	고란초 집단자생지	1995.10.2

- 본 사업지구를 포함한 고현항 주변 해역은 해역수질기준 Ⅱ등급 해역으로 지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7-160호)되어 있으며, 거제시에는 한산만구역(115.03km²) 및 진동만구역(78.23km²)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05호)되어 있으나 사업지구로부터 약 5.0km 이상 이격되어 있음

<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현황 >



2. 예정구역 선정사유

선정지표	선정사유
노후화/ 유희화	○ 고현항의 항만시설로는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운영 중인 철재 부두(122m)로서 취급화물은 조선소 사용기자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철재와 모래 화물을 제외하면 항만물동량 발생은 미약한 실정임 ○ 장평물양장(80m) 및 여객부두가 운용중이나 배후부지 협소 및 이용편의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장래 연륙교량(거가대교 및 거마대교) 개통으로 항만을 이용하는 화물 및 여객수요는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됨
대체항만	○ 항만기본계획('06.12)에 의거 '11년까지 일반, 모래 및 여객부두 확충 등 재편계획 준용 ○ 일반잡화 등의 물동량을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모래(오비)부두 측면에 일반부두(5천DWT급×1선석) 배치 ○ 실수요자인 현지어민들의 접근성과 이용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내륙측 도심과 인접한 위치에 어선전용 물양장 배치 ○ 관광객들을 위한 유람선 취항 및 장래 크루즈선의 취항까지 가능하도록 여유공간(장래확장부두) 확보
개발시기	○ 항만기능이 미약하고 대체부두 확보 등과 연계개발이 이뤄지므로 즉시 개발 가능
법적취지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인 노후한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항만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항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에 부합 ○ 대상지는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상업) 및 공원으로 기 계획되어 있으며 계획면적(919,064㎡)과 다소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변경절차 이행 예정

선정 지표	선 정 사 유
도시계획적 잠재력	○ 거제시는 부산광역시, 김해시, 마산시,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등이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인구 1,000만명의 강력한 배후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음 ○ 거제~가덕도간 연결도로가 완공되어 경남지역의 외곽순환교통 체계가 형성되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거제연장선이 완공되어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는 2010년 이후에는 인접 도시들이 강력한 지원세력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정책과의 연관성	○ 거제시는 세계 3대 조선기업 중 2개 기업이 입지하여 명실상부 세계적인 조선산업도시로서의 입지를 지키고 있는 지역으로 그 면모에 걸맞은 지역의 상징적인 Land Mark가 필요함 ○ 고현항은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에 의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현재 개발이 미흡한 실정임 ○ 거제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의사가 매우 강한 지역으로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용이함
파급 효과	○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투자 경쟁력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친환경적 요소를 도입하여 생태계의 보전과 친수성에 대한 배려측면에서 공간계획 ○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와 조선산업의 발전에 따라 세계 조선시장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도시공간 창출
종합의견	○ 고현항은 항만시설의 노후화 및 워터프론트 개발 수요 증대 등 주변여건의 변화가 항만에 대한 기능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낙후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지자체의 개발의지도 매우 높으므로 항만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선정함

IV. 항만기능의 재편 및 정비방향

1. 항만기능재편 필요성 및 여건분석

□ 항만시설 이용 현황

- 현재 이용 중인 고현항의 접안시설로는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민자시설로 운영 중인 122m의 5천DWT급 철재부두가 운영되고 있으며, 취급화물은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기자재가 대부분임
- 최근에 운영을 시작한 오비부두('08. 4)는 연장 130m, 접안능력 5천 DWT급의 규모로서 기존의 모래취급부두인 고현물양장('08.4 폐쇄)의 기능을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항만의 서측에 80m의 장평물양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일반화물의 운송과 소형선의 입출항 및 접안장소로 활용됨
- 항만의 남측에 위치한 여객선터미널에서 고현~부산간의 정기여객선의 운행을 통한 여객 및 일반화물의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음
- 소형어선, 관공선 등은 장평물양장 및 그 부근에 위치한 선착장과 주변호안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 여건변화에 따른 항만재정비 필요성 대두

- 고현항은 1983년 무역항으로 지정되었으나 삼성중공업 조선소 내의 철재부두 시설과 최근 운영을 시작한 오비두부를 제외하면 소형선부두로 운영 중인 물양장과 여객선, 관공선 접안용의 소형잔교 시설만이 건설되어 있음

- 고현항이 위치한 거제도는 한려해상공원의 관광거점으로 대규모 화물을 유치하는 산업단지가 전무하므로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항만의 기능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개발이 요구됨
- 소형어선 접안시설이 부족하여 현재 호안시설 등을 이용하는 실정이며, 이를 고려한 항만개발계획이 필요한 실정임

2. 대체항만시설 개발방향 및 규모

□ 평면배치 기본구상

- 전국항만 기본계획('06.12)상 '11년까지의 화물수요, 접안능력 및 규모 등에 부합되도록 일반 및 여객부두, 물양장 등 접안시설 배치
- 개발규모
 - 일반부두 : 5천DWT급 × 1선석(130m) - 물양장 : 103m
 - 여객선부두 : 200m - 호안시설 : 95m
 - 장래확장부두 : 130m - 마리나시설 : 1식
- 개발면적

구 분		면 적(m ²)	비 고
항만시설	계	65,823	
	일반부두	23,188	
	여객선부두	17,955	장래부두 포함
	물양장	3,084	
	마리나시설	21,596	

< 고현항 항만기본계획('06.12) >



□ 일반부두 및 여객선부두

- 항만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모래(오비)부두 측면에 일반부두 5천DWT급 1선석(130m) 배치
- Waterfront City 시설부지 전면해상에 인공섬을 조성하여 장래에 크루즈 유람선까지 유치가 가능하도록 여유공간(장래확장부두) 확보

□ 어선물양장 시설

- 현재 접안시설의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내륙측 도심과 인접한 위치인 Waterfront City 좌측상단에 소형어선의 접·이안이 용이한 물양장시설을 설치

□ 마리나 시설(장래 계획)

- 마리나 관련 제반시설 등 배치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여유공간 확보

V. 토지이용·교통계획 및 공원광장계획 등의 기본구상

1. 토지이용계획

□ 기본전제

- 도시기능별 집중을 통한 공간배치로 공간이용의 효율성 극대화
- 대상지의 기능의 다양화 및 입지특성을 고려하고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교통체계 등과 연계하여 유기적인 공간구성이 될 수 있도록 구성

□ 공간배분 고려사항

- 본 계획에서는 토지이용분류를 도입시설 선정 시 용도분류에 의한 주거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관광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공공시설 등으로 분류

구 분	고 려 사 항	비 고
주거시설	◦ 일조권 등의 자연여건이 유리한 곳, 쾌적성 및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상업시설	◦ 상징성이 높고 도시이미지를 고양할 수 있는 지역	
업무시설	◦ 접근성이 양호한지역, 간선도로변, 기능적 연계성 강조	
관광시설	◦ 쾌적성, 경관성, 접근성을 고려하여 해양경관이 양호한 지역	
문화시설	◦ 접근성이 양호하고 관광시설과 연계 가능한 지역	
체육시설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업무 및 주거시설과 근접한 지역	
교육시설	◦ 주거시설 밀집지역에 배치	
의료시설	◦ 종합의료복지 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한 지역	
공공시설	◦ 접근성이 양호하고 타 시설지와 교통체계 연계가 편리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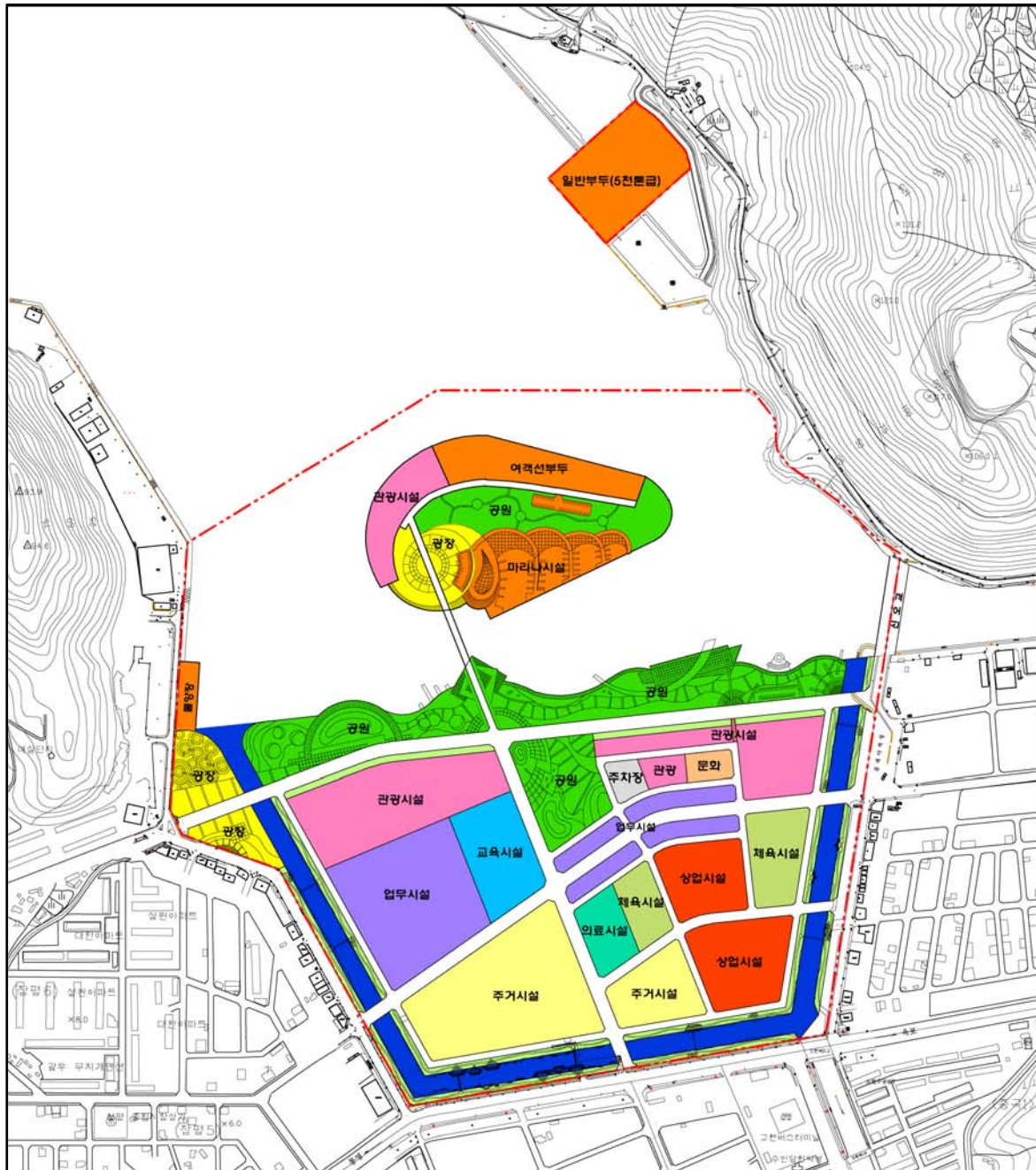
□ 토지이용구상

- 도입시설별 수요면적 추정을 근거로 기능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 사업대상지내 공공시설 및 항만시설 등을 확보하여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공원·녹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친환경단지로 계획
- 주변현황 및 도시공간구조 상 발전축에 따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계획 수립
- 기존 도로체계를 최대한 수용하며, 시설별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교통체계 확립

< 토지이용계획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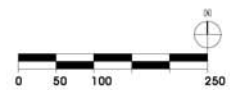
구 분	도입가능시설	면적(m ²)	구성비(%)
계	-	919,064	100.0
항만시설	여객터미널, 부두, 마리나	65,823	7.2
유치시설	-	241,754	26.3
주거시설	공동주택, 주상복합	53,536	5.8
상업시설	전용상가, 컨벤션 센터	30,362	3.3
업무시설	오피스텔, 비즈니스센터	49,856	5.4
관광시설	놀이시설, 워터파크, 관광식당	63,318	6.9
문화시설	영화관, 전시장, 박물관	2,964	0.3
체육시설	스포츠센터, 운동장, 체육관 등	17,997	2.0
교육시설	특수고, 학원, 영어마을	16,008	1.7
의료시설	종합병원, 특수병원, 전문병원 등	7,713	0.9
공공시설	-	310,859	33.8
광장	일반광장	28,689	3.1
공원	근린공원, 생태공원	95,018	10.3
녹지	완충녹지	34,469	3.7
수로	수로	49,595	5.4
도로	주간선, 보조간선	100,309	11.0
주차장	노외주차장	2,779	0.3
공유수면	-	300,628	32.7

< 토지이용계획구상(안) >



범례

구분	면적		구성비	구분	면적		구성비
	m ²	평			m ²	평	
총계	919,064	278,016	100.0	관광시설	310,859	94,035	33.8
유지시설	241,754	73,130	26.3	광장	28,689	8,678	3.1
주거시설	53,536	16,195	5.8	공원	95,018	28,743	10.3
상업시설	30,362	9,184	3.3	녹지	34,469	10,427	3.7
업무시설	49,856	15,081	5.4	수로	49,595	15,002	5.4
관광시설	63,318	19,154	6.9	도로	100,099	30,280	10.9
문화시설	2,964	897	0.3	보행자도로	210	64	0.1
체육시설	17,997	5,444	2.0	주차장	2,779	841	0.3
교육시설	16,008	4,842	1.7	항만시설	65,823	19,911	7.2
의료시설	7,713	2,333	0.9	관유수면	300,628	90,940	32.7



2. 교통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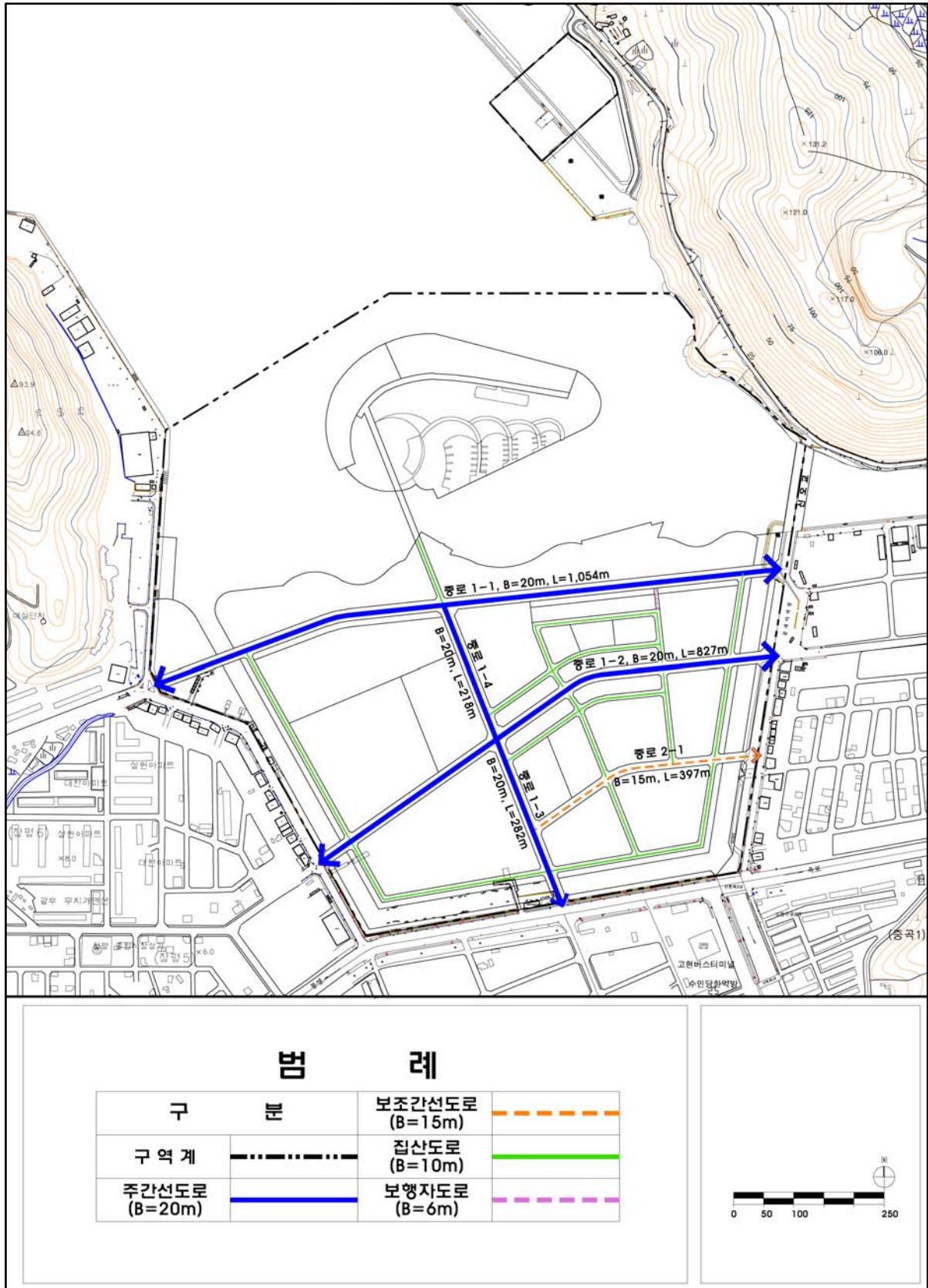
□ 기본전제

- 국도14호선 및 기존 도시지역과 연계가 되는 가로망 계획수립
- 주진입동선 기능별 분리, 단지내 환경성 및 쾌적성 제고를 위해 가로망 위계구축
- 공원, 녹지 시설과 연계한 보행동선 확보
-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노외주차장 확보

□ 교통처리계획

- 주간선도로
 - 계획도로를 확장하여 남북축의 주간선도로로 계획하여 지구내 원활한 교통연결
 - 계획대상지 동서측 생태공원 도로는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활용
- 보조간선도로
 - 산업지구내로 도로를 확충하여 지구내 보조간선도로 계획
 - 원활한 교통을 위해 외곽을 보조간선도로 계획
- 보행자도로
 - 보행동선은 가급적 차량동선과 분리하여 설치
 - 수변 연접공간 바다를 조망하면서 산책할 수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 계획
 - 친수공간 및 공원·녹지 공간내 산책로 조성

< 교통처리계획도 >



3. 공원·녹지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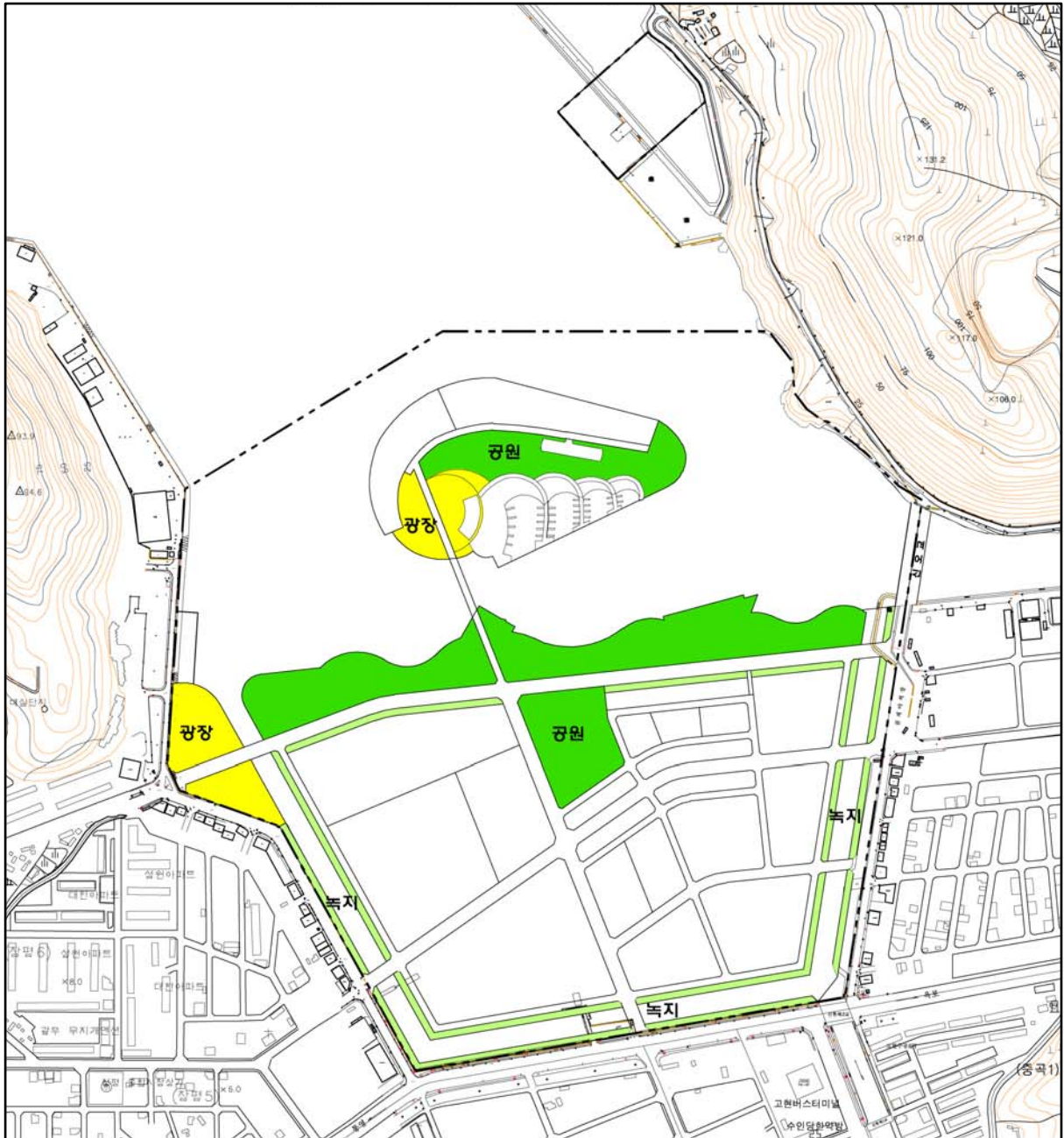
□ 기본전제

- 공원·녹지계획은 자연환경보존 및 이용객의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쾌적한 환경을 창출하도록 함
- 식재를 위한 수종의 선택은 지역의 자연환경과의 적응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계획을 수립함

□ 공원·녹지 조성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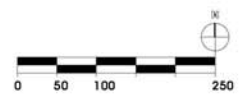
- 쾌적한 단지조성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구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녹지체계와의 연계를 도모함
- 항만재개발은 친수공간의 확보측면에서 시행됨에 따라 해안변 녹지대조성 및 친수형 호안계획
- 동선의 결절점(Node) 및 주요지점에 Land Mark 성격을 지니는 수목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간의 특이성을 강조
- 조경시설물은 해양경관에 조화되고 기능성과 안전성, 시각적 효과 등을 살릴 수 있도록 계획하며, 편의성, 안전성을 감안하여 재료 및 규격, 형태 결정
- 조경시설물은 타 시설과의 조화 및 시설물 상호간의 연계성을 갖도록 계획하며, 형태, 색, 재료의 디자인 면에서 계획지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 대상지의 특성상 다량의 염분이 함유되어 식물생장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염분용탈을 촉진시키기 위한 맹암거배수로 시설과 매립토지에 산흙을 성토하여 식재지반을 조성하여 계획

< 공원 · 광장계획도 >



범 례

구 분		면 적		구성비
		m ²	평	%
공 원		95,018	28,743	10.3
녹 지		34,469	10,427	3.7
광 장		28,689	8,678	3.1



VI. 추정 사업비 및 단계별 투자계획

□ 추정 사업비

- 건설공사비는 '2008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출함
- 제경비, 부대비용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총사업비의 산정)에 의거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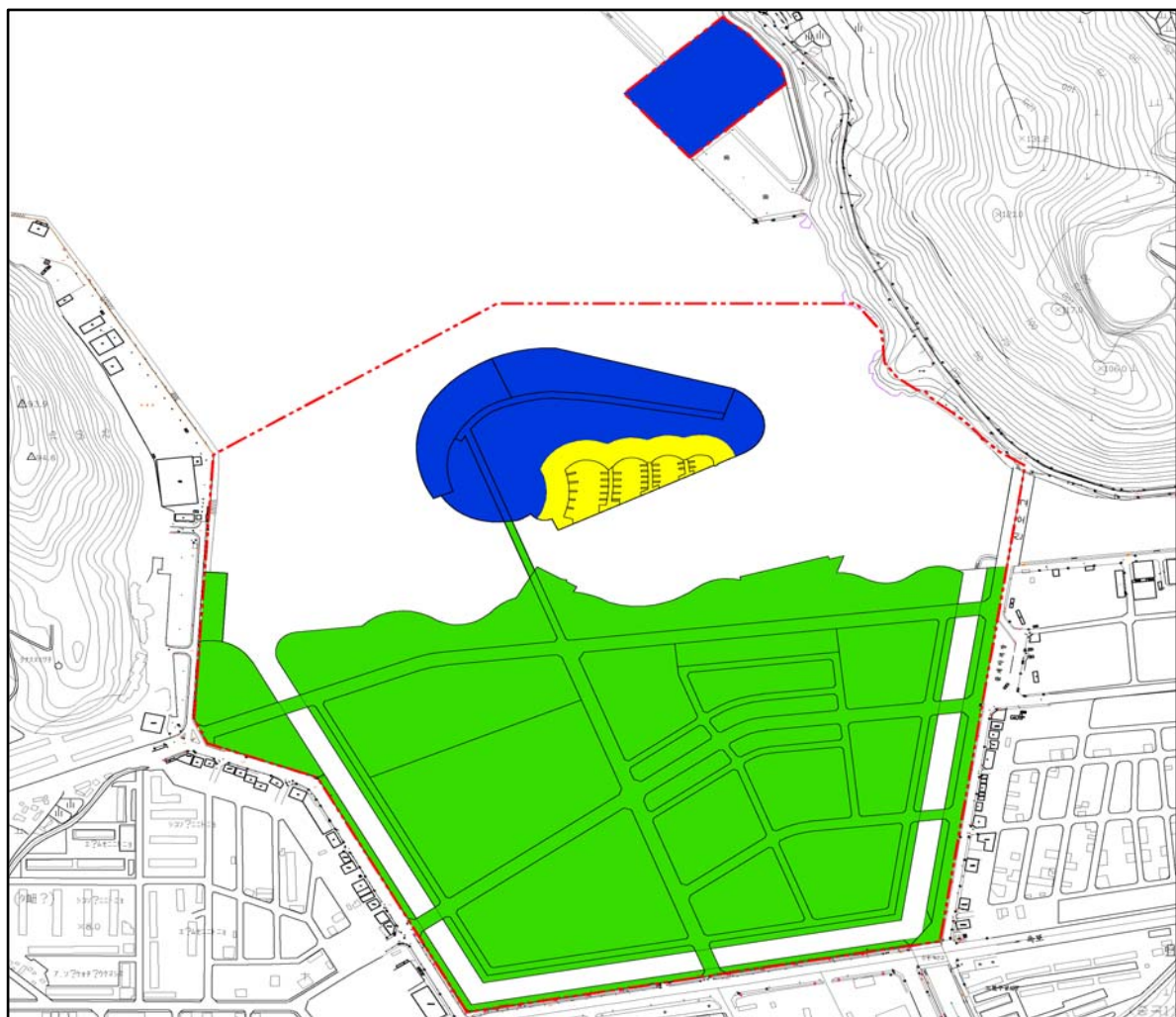
구 분			추정사업비 (백만원)	비고	
총사업비	조 사 비		1,700	공사금액의 0.5%	
	설 계 비		8,400	공사금액의 2.5%	
	공사비	내륙측 부지조성	외곽호안	31,200	
			개수로호안	49,400	
			부지매립	54,200	
			물양장	1,700	
			소 계	136,500	
		해양측 부지조성	호안	18,000	
			접안시설	33,500	
			친수시설 및 매립	18,900	
			소 계	70,400	
		진입교량	진입교량	16,600	
			신오교 확장	10,000	
			중앙 연결교량	18,000	
			소 계	44,600	
	기 반 시 설		85,500	단지조성, 조경시설 등	
	소 계		337,000		
	부대비	영향평가비		3,000	
		매립면허비		2,000	
		공사감리비		8,400	공사금액의 2.5%
		공사보험료		1,700	공사금액의 0.5%
		분양수수료		10,000	공사금액의 3.0%
		금융부대비		8,300	공사금액의 2.5%
		공사이행보증		300	
		소 계		33,700	
	제세공과금		15,600	토지취·등록세 등	
	영업준비금		11,200		
총 사업비 계		407,600			
물가변동비		62,800	물가상승률 4.0%/년		
건설이자		20,600	금리년 8.0% 적용		
총 투자비		491,000			

※ 상부 건축비는 제외

□ 단계별 투자계획

○ 1단계, 2단계, 장래로 구분하여 단계적 개발 추진

구 분	추정사업비 (백만원)	비 고
1단계	물 양 장	2,500
	내륙측 호안	117,400
	내륙측 매립	79,000
	진 입 교 량	65,000
	소 계	263,900
2단계	해양측 호안	26,200
	여객/장래확장 부두	24,000
	일 반 부 두	11,400
	해양측 매립/상부	27,500
	기 반 시 설	117,300
장래계획	소 계	206,400
	마리나 시설	20,700
합 계	491,000	부지전체



VII. 관계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

【 관계기관 협의 요약 】

■ 협의기관(28개기관)

- 중앙부처 및 관할 지자체(14), 본부 실·국 및 유관기관(14)

■ 의견 제시기관(7개기관)

- 중앙부처(2) :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이행
- 지자체(1) : 경상남도
- 본부 및 유관기관(4) : 연안계획과, 도시정책과, 해양보전과, 마산청

■ 조치결과

- 총 48개 협의의견 중 수용 44, 판단유보 2, 미수용 2개로 분석
 - 개별법 절차준수 및 토지이용구상(기본계획)단계에서 이행가능 한 사항은 수용
 -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단계에서 구체적인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후행계획에서 결정토록 판단 유보
 - 대상구역 범위확대 등 기본계획(안)의 범위와 선정기준·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의견은 미수용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안) 관계기관 협의 조치계획

관련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국 토 해 양 부	연안계획과	·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수면매립(618,436㎡)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반영)절차를 거쳐야 함	· 향후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승인 절차와 병행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반영)절차를 이행할 예정	수용
	도시정책과	·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안)은 「2020 거제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 예정용지(상업, 0.349km ²) 및 공원(0.133km ²) 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도록 조치	·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거제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할 예정	수용
		· 대상지 중심을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변(중로1-2호선)에 계획된 업무용지는 상업용지로 계획하여 개발하고, 대신 해당지역의 남측에 배치한 상업시설용지를 업무용지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등 후행 행정계획에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	수용
		· 교육시설은 주변에 정온한 환경을 요구하므로 대상지를 관통하는 도로(중로1-2호선, 중로1-4호선)의 교차점과 관광시설에 인접하여 배치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대상지 남서측에 위치한 상업시설과 위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등 후행 행정계획에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	수용
		· 북측 인공섬의 차량동선은 부두뿐만 아니라 마리나 시설의 차량접근 등을 고려하여 막다른길(cul-de-sac) 보다는 루프(loop) 형태의 도로망 계획을 검토	· 후행 행정계획인 사업계획 수립 시 차량동선이 원활하도록 루프(loop) 등의 도로망 구축 예정	수용

관련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 본 사업은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과 장평동 일원 및 전면해상에서 항만기능 노후화,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기능 부족, 친수항만 개발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현항을 재개발(규모:919,064m²)하는 전임 · 본 사업예정지 주변해역은 해역별 수질등급Ⅱ등급 해역으로 고현항에 속하여 죽도국가산업단지와 오비일반 지방산업단지가 인접하며 5km 이내에 진동만수산자원보호구역이 위치함 · 간선수로 수질관리 대책(p.151, p.258)에 대해 수로변의 완충녹지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수변공간으로서 기능 수행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질적으로 친수공간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 간선수로변 완충녹지가 친수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환경영향평가 및 사업 계획 수립 시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	수용
		· 사업지구 주변 해역의 수질을 개선하여 주민 및 관광객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생태적으로 높은 가치를 갖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근 하천(고현천, 장평천)의 양호한 유입 수질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 바, 유입하천의 수질의 계절적 변동을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등을 통해 자세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해역(수로부 포함)의 수질변화를 예측하고 관련 저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고현천, 장평천 수질의 계절적 변동을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등을 통해 자세히 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	수용

관련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마산지방 해양항만청	· 일반부두, 여객선부두 등의 평면배치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동 부두로 접안 하는 선박의 항로 및 박지구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바, 실시계획시에는 이를 반영한 준설계획 수립이 필요 하고, 또한 여기서 발생하는 준설토사는 동 사업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반영	· 후행 행정계획인 사업계획 및 실시 계획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	수용
농림수산 식품부	· 사업의 합목적성을 위해 친수시설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며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므로 공공용지 확보 위주의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임	· 본 사업의 유치시설 비율은 39.13%이며, 항만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용지는 60.9%를 차지(해수면 300천㎡제외) · 부산북항의 경우 유치시설 비율 47%, 공공시설 53% 로 계획(해수면 제외) · 후행 계획단계에서 전문가 자문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적정 비율의 공공용지를 확보할 계획	판단 유보
	· 간선수로 수질관리 대책에 대해 수로 변의 완충녹지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토지이용계획도상에 나타난 완충구역의 폭이 좁아 수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질적인 친수공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넓은 친수 공간의 확보가 필요할 것임	· 향후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 수질, 소음, 진동 등의 분야별 환경 영향조사 분석을 통해 적정규모의 완충녹지 등 친수공간을 확보할 계획	판단 유보
	· 공사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강우시 토사유출 등의 영향으로 인한 수질 및 해양생태계의 피해가 발생할 것 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임	· 공사시행시 발생이 예상되는 비산먼지 및 토사유출로 인해 사업지구 인근 해역에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별도 수립할 예정	수용

관련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농림수산 식품부	· 사업지구 주변 해역의 수질을 개선하여 주민 및 관광객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생태적으로 높은 가치를 갖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질오염도가 높은 고현천과 장평천의 유입이 수로환경과 주변해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주변의 주요 오염원(하천유입, 산업단지)에 대한 조사와 연계하여 수질변화예측 및 영향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향후 환경영향평가시 사업지구 주변의 주요 오염원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쾌적한 환경유지 및 영향최소화를 위한 저감방안을 강구할 계획	수용
	· 유수의 흐름이나 퇴적물의 축적, 유실 등에 대한 50년빈도 홍수발생시 수위 분포는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최근에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자주 관찰되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임	· 사전환경성,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평가 등의 면밀한 조사, 분석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기후현상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	수용
	· 기존의 해안가 시설들은 해안으로부터 이격됨에 따른 지역갈등이 예상되므로 지역주민(특히, 어업민 등)과의 대화를 통하여 마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어업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도심과 근접한 위치에 물양장을 입지하였으며 추후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	수용
환경부	❶ 총괄 의견 · 본 해역은 반폐쇄되어 해수유동이 낮고, 오염된 하천수의 유입 등으로 항내 자정능력이 크지 않은 상태로 대규모 해양매립 및 Waterfront City 개발은 해양환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관련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환경부	· 해수흐름 변화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초기우수 및 각종시설로부터 유출되는 오염물질의 항내 유입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향후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 총체적인 해양환경 저감방안을 강구하고, 오염물질이 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비점오염원처리시설 설치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	수용
	· 사전환경성검토서상의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아래 “② 분야별 협의의견”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시 “분야별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할 예정	수용
	·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환경적 악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추가대책 마련 후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예측하지 못한 환경적 악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민·관·정 협의를 통해 적절한 추가대책을 강구	수용
	·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피해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추진시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강구할 계획	수용
	② 분야별 협의의견 1. 해양환경 · 사업지구 대부분이 공유수면매립에 의해 부지가 조성됨에 따라 해수유동 저하로 인한 해양수질 악화 및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 수리모형실험, 해양조사 등을 통해 항내 유속변화, 해저퇴적환경변화 등을 예측하고 원활한 해수순환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립규모 및 배치계획 변경 등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기본설계시 및 환경영향평가시 수리 및 수치모형실험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해수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저감방안 수립 예정	수용

관련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환경부	· 본 사업시행을 위한 공사시(기초굴착·토사매립 등) 오락발생이 예상되며, Water- front City 운영에 따른 오염원 발생 증가 등으로 해양환경 오염이 예상되므로 · 공사시 부유물질 확산방지를 위해 공사시기는 가급적 우기를 피하고, 사업지구 주변 해상부에 필터매트, 오락방지막 설치, 단계적 시공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 운영시 강우전 도로 및 배수로 청소, 폐기물 적법관리 등을 철저히 실시함과 아울러, 사업 및 지형의 특성에 맞는 비점오염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해수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공사시 부유물질 발생이 예상되는 준설과 매립 등의 공정시 부유물질 확산방지를 위해 해상부에 필터매트 및 오락방지막 설치, 단계적 시공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적절한 저감 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 · 운영시 비점오염물질은 자연형시설 또는 장치형시설 등 사업 및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처리시설을 검토하여 설치할 계획	수용 수용
	· 기상이변에 의한 해일 및 해수면 상승시 간선수로를 통하여 역류하여 기존 시가지 침수 등 발생이 예상되므로 · 해양수치시물레이션을 구체적으로 실시하여 간선수로 위치 및 수로폭 적정성, 갑문설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재해에 안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를 고려하여 적절한 단지 계획고를 확보하고 본 사업으로 인한 침수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수립 예정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예정	수용
	2. 해양동·식물상 · 항만시설, 배후용지시설, 공공시설 등 조성을 위한 매립공사에 따른 부유물질 증가 등으로 해양 동·식물상에 영향이 예상되므로 · 공사전 사업지구 전면 해상에 오락방지막 설치, 필터매트 포설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 부유물질 확산을 저감하는 한편, 토사 및 오염물질의 유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시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방안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실시계획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 반영할 계획	수용

관련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환경부	공사중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유물질 농도의 급격한 증가시 일시적인 작업중단, 작업방법 개선 등 탄력적인 공사장 운영을 통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공사시행단계에서의 환경저감 및 대응 방안을 공사시방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할 계획임	수용
	호안안벽은 가급적 사석식으로 계획하여 사석사이의 공극 및 부착면적을 넓혀 각종 수서생물의 서식처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본 사업지구의 호안외벽 형식은 토지이용 상의 상부 구조물 배치계획을 토대로 항내의 해양수질과 해양생태계 분포 및 서식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본 사업지구에 적절한 호안형식을 결정	수용
	3. 수질 고현항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될 오수량은 3,122m³/일로 거제중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할 계획인 바, 거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이 이루어 져야 함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차집관로로 이송하여 인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예정	수용
	Waterfront City 주변에 간선수로 개설시 수로내 경사 또는 강제순환 방식 도입 등 수로내 흐름 정체로 인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수로내 폭기시설 설치, 수로변 완충녹지 조성 등 적절한 수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 간선수로내 흐름 정체로 인한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연형 또는 장치형, 완충녹지 등의 적정 시설을 배치할 계획	수용
	항내 수질개선을 위해 현재 오염물질의 주 유입경로인 고현천, 신현천 등의 오·폐수가 사업지구 인근해안에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적정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오·폐수가 사업지구 인근 해안에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적정방안을 강구하겠음	수용
	4. 대기질 공사시 및 운영시 장비투입과 토공작업, 시설물 운영, 교통 및 선박운행에 따라 비산먼지,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관련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환경부	- 공사시에는 사업지구 전반에 걸친 주기적인 살수, 공사차량 속도 제한, 공사장비 투입대수 조정 등 현장에 맞는 적절한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 운영시에는 사업지구 녹지공간에 대기오염 정화수종을 식재하여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청정연료 사용을 계획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주기적인 살수, 방진망 설치, 세륜 및 측면 살수시설 설치, 차량운행속도 제한, 공사장비 투입대수 조정 등 현장여건에 맞는 적절한 저감대책을 강구할 계획 - 운영시 사업지구 녹지공간에 대기오염 정화수종을 식재하고, 청정연료 사용을 계획하여 쾌적한 환경의 유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시 계획시 반영 예정	수용 수용
	5. 토지이용 사업지구 주변은 시가화된 지역으로 휴식 등을 위한 공원·녹지 기능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지구는 14%에 불과 하므로 추가 공원·녹지 확보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사업지구내 공원·녹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할 예정	수용
	친수공간 및 해안으로서의 주변지역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 개설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대다수의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대변화에 부응한 다양한 친수시설 조성방안을 마련할 계획	수용
	6. 소음·진동 공사시 장비의 동시가동으로 인한 합성소음도는 82.2dB(A)로 생활소음 규제기준(65dB(A)) 감안시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110미터 이내에서는 소음영향이 예상되는 바		

관련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환경부	· 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업무시설, 상가시설 등에 소음·진동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설방음벽 설치, 소음·진동발생 최소화 공법 적용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공사장비의 가동 등으로 인한 인근 업무시설과 상가시설에 소음·진동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설방음벽 설치, 소음·진동발생 최소화 공법 적용 등 적절한 계획 수립 예정 · 향후 환경영향평가지 구체적인 공사물량 등이 확정되면 소음·진동 영향예측을 추가 시행하여 인근 정온시설 등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용
	· 운영시에는 지구내 가로망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교통소음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 사업지구내 도로주변에 완충녹지 및 공원을 계획하여 소음원으로부터 차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교통량 증가 및 항구에 입·출항하는 선박 등에 의한 소음발생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사업지구내 완충녹지 및 공원을 배치하는 등 피해방지 방안을 강구할 계획	수용
	7. 기타 ·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서식처 및 토지이용 등 변화를 예측하고 관련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함	·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해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단지 계획고를 확보하고, 서식처 및 토지이용 등 변화에 적절한 저감방안을 마련할 계획	수용
	·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전문처리업체 위탁처리, 오염방제 전문업체 지정, 오일웬스·유처리제 사용 등의 대책을 추진하여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 업체 및 절차에 의거 처리될 수 있도록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할 계획	수용

관련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경 상 남 도	환경 정책과	·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안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공사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출현 및 서식지를 발견할 경우 생태전문가에 의한 현지 정밀 조사 등을 실시하여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대책 등 생태계의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환경영향평가, 후행 행정계획 수립 시 각종 영향저감 및 보전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	수용
		· 공사시 매립토사 운반 및 토공물량 하적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건설기 계장비 가동 및 대형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 등으로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비산먼지는 살수, 방진망, 세륜시설 등 현장여건에 맞도록 적절한 저감 대책 강구할 예정 · 소음·진동에 대해서는 가설 방음벽, 최소화 공법적용 등 적절한 계획을 수립 할 계획	수용
		· 오비부두 배후 준설토 투기장에 대하여는 곤충류 이상번식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 및 악취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 의 생활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 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임	· 오비부두 준설토투기장은 2009년말 까지 투기완료 계획으로 유충 및 악취가 발생치 않도록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 하여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	수용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생태계보 전협력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사업 을 인허가(승인 등)한 경우 그날부 터 20일 이내에 자연환경보전법 시 행규칙 별지11호 서식에 의거 우리 과로 통보하여야 함	· 관계법령 절차에 의거 적정 이행할 예정	수용
		· 본 검토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자 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검토 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제시된 자료의 허위 등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에 는 사업시행자가 환경상의 영향과 변화를 예측하여 저감방안(보호대책) 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예측하지 못한 환경적 악영향이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민·관·정 협의를 통해 적정저감 (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	수용

관련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경 상 남 도	교통 정책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별표1]에 의하면 「항만법」 제2조제1호에 의한 항만의 건설은 연간 하역능력 150만톤 이상일 경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승인관청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본 사업지는 항만의 건설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도 포함하는 것으로 [별표1] 제1항 라목에 의한 항만의 건설의 경우를 적용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향후 본 사업 기본계획(안)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절차 이행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심의 여부에 대해 별도 협의하여야 할 것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관계기관과 별도 협의할 예정	수용
	도시 계획과	- 본 지구는 2008.7.29 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상 고현만 오염차단을 위한 수변공원 및 녹지를 계획하는 조건으로 상업용 시가화예정용지(0.349㎢)로 지정되어 있음 - 반영요청서에 제시된 토지이용계획상에는 항만시설, 유치시설, 공유수면을 합한 면적이 0.919㎢로 반영되어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거제시장(도시과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추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이 부분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현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상 당해 지역의 용도별 소요면적중 30% 범위내에서의 조정 등의 경우에만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음	향후 사업계획수립 절차와 병행하여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거제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할 예정	수용

관련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경 상 남 도	치수 방재과	· 지방하천을 점용·편입하고자 할 경우 「하천법」에 의거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설계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수립하여야 하고 하천구역 및 하천 기본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관리청인 경상남도(치수방재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대상지는 고현항 항만구역 내에 위치하며, 지방하천의 편입은 전무함	미수용
		· 실시계획 수립 전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받아야 함	· 후속 행정계획인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할 예정	수용
	문화 예술과	· 사업시행 전 문화재보호법 제91조에 의거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출, 문화재청과 협의완료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추후 수행되는 실시계획수립 시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과 협의 후 사업 시행할 예정	수용
		· 사업예정지 인근에 문화재자료 제99조 「거제포로수용소」가 위치하고 있으니 지정문화재 경계에서 300m내에 위치할 경우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44조에 의거 건설공사가 지정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여부를 검토 받아야 함	· 거제포로수용소는 사업예정지와 약 1.8km 이격되어 있으므로 지정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미수용
	도로과	· 현재 첨두시간대 국도14호선의 교통량이 폭주하므로 본 사업으로 유발되는 교통량을 국도와의 원활한 접속과 연계 도시계획도로의 건설, 신개발지를 포함한 시가지 일대의 교통처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본 사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교통량의 증가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	수용